

보 석 조 건 변 경 신 청

사건번호 2000고단 000호 절도

피고인 0 0 0

위 피고인은 전 주소지인 OO시 OO구 OO길 OO로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석되어 있는바, 이번에 피고인의 거주지를 전거할 예정이므로, 아래 주거지로 주거제한의 보석조건변경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변경할주거제한지

1. 주 소 ○ ○ 시 ○ ○ 구 ○ ○ 길 ○ ○

20 이 이 년 이 일 이 일

위 피고인 ○ ○ ○ (인)

○○지방법원○○지원형사○단독 귀중

| | | | O. Krith | 한법률구조공단 |
|------|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제출법원 | 사건계속 법원 | | www.kldc | |
| 신청권자 | ·피고인, 변호인, 법정대리인,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자매, 가족, 동거인, 고용주 | | | |
| 제출부수 | 신청서 1부 | 관련법규 | 형사소송법 94~100조의2, 102~104조의2 | |